

2026년 한-체코, 한-중국 에너지국제공동R&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2026년 한-체코, 한-중국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2일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- 목 차 -

1. 사업개요
 - 1-1. 사업목적
 - 1-2. 사업내용
 - 1-3. 지원분야,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등
2. 사업추진체계
3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
 - 3-1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
 - 3-2.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
 - 3-3.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
4.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
 - 4-1. 지원분야
 - 4-2. 신청자격
 - 4-3. 지원제외 처리기준
 - 4-4.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
5. 평가절차 및 기준
 - 5-1. 평가절차
 - 5-2. 평가기준
6. 근거법령 및 규정
7. 신청방법,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
8. 문의처 등
9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참고 불임자료 안내

1. 사업개요

1-1. 사업목적

-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

1-2. 사업내용

- (한-체코 공동펀딩 R&D)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체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
 - *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체코 컨소시엄은 체코기술청(TACR)이 각각 지원

※ 국내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KETEP)에, 체코 기관은 체코기술청(TACR)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**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**
 ※ 한국 또는 체코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**한국과 체코 양측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**

- (한-중국 공동펀딩 R&D)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중국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
 - *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(과학기술부)가 각각 지원

※ 국내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KETEP)에, 중국 기관은 중국과학기술부 국제협력센터(ISTCC,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)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**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**
 ※ 한국 또는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**한국과 중국 양측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**

1-3. 지원분야,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등

- 한-체코 국제공동연구

내역사업	공모형태 (개발형태)	개 요	기술분야	지원과제수
글로벌 시장개척	자유공모 (혁신제품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규모 : 총 24억원 내외(과제당 12억원 내외) (1차년도 7.5억원(과제당 3.75억원 내외)) *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■ 개발형태 : 혁신제품형 ■ 기 술 료 : 징수 ■ 연구개발기간 : 36개월 이내 ■ 주관연구개발기관 : 기업(양국 공통) ■ 체코 기관(기업·대학·연구기관) 참여 필수 	원자력, ESS	총 2개 (원자력 1, ESS 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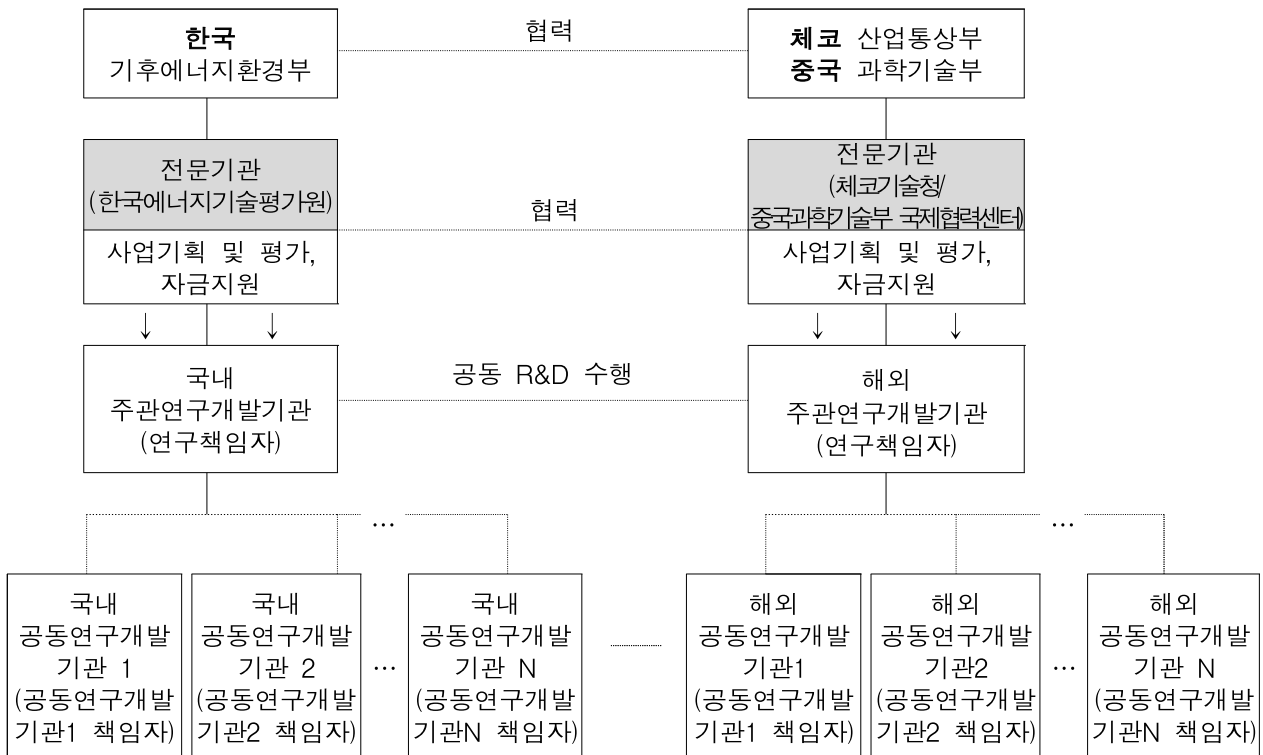
□ 한-중국 국제공동연구

내역사업	공모형태 (개발형태)	개 요	기술분야	지원과제수
글로벌 시장개척	자유공모 (혁신제품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규모 : 15억원 내외(1차년도 2.5억원 내외) *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■ 개발형태 : 혁신제품형 ■ 기술료 : 징수 ■ 연구개발기간 : 36개월 이내 ■ 주관연구개발기관 : 기업(중소·중견기업 참여 필수) ■ 중국 기관(기업·대학·연구기관) 참여 필수 	CCUS, 전력망	1개

- ※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: 해외시장진출 유망 탄소중립 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를 통해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
- ※ 지원 규모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
- ※ 평가결과,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, 연구개발기간 변동 가능
- ※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"일괄협약"(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) 체결 원칙
- ※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"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산정 방법"을 참조

2. 사업추진체계

□ 정부협력기반(공동펀딩) 국제공동연구(체코, 중국)



3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

3-1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

① 연구개발비 구성

-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, 그 외 기관·단체·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)로 구성
 - 연구개발비 산정 시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체크는 9개월, 중국은 6개월, 세부 내용은 “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산정 방법” 안내사항 참조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
 - **수요기업**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,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
 - * “수요기업”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,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**참여기업**을 말함
 - *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**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협약서 제출 필수**
-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(단, 중복으로 적용 불가)

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

연구개발기관 ¹⁾ 유형	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(혁신제품형)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
중견기업 ²⁾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
중소기업 ³⁾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
그 외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

- 1) “연구개발기관”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
- 2) “중견기업”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
- 3)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

-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. 단,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

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

-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,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‘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’은 아래 표를 따름

연구개발기관 유형	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(혁신제품형)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중견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중소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그 외	필요시 부담

-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. 단,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재산정하여야 함

3.2.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

- 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’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

□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대상

- 연구개발과제 특별·단계·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, 우수, 보통,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,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
- *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(수익)의 일부를 징수

□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

-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

분류		부과기준		기술료율	기술료 납부 상한
제3자 실시	중소기업	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	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	중견기업	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	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대기업·공기업	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	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직접 실시	중소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	중견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대기업·공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
-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: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

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

-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

3-3.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: 붙임2 참조

4.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

4-1. 지원분야

구분	연구개발과제유형		
	가. 추진체계	나. 개발형태	다. 공모형태
연구개발과제	일반형	혁신제품형	자유공모형(분야지정)

연구개발과제 유형 - 가 (추진체계)

-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: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
 - 주관연구개발기관 :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 - 공동연구개발기관 :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 - 연구책임자 :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

연구개발과제 유형 - 나 (개발형태)

-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: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,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·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

연구개발과제 유형 - 다 (공모형태)

-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: 제시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

4-2. 신청자격

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
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,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,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제8의3부터 제8의5,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
 -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 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

4-3. 지원제외 처리기준

다음의 경우는 사전지원제외함

-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국내신청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, 해외기관은 각 전문기관(체코기술청 또는 중국과학기술부 국제협력센터)에서 안내한 접수처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동시 접수하지 않은 경우 (양국 모두 접수 필수)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, 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 예외) 및 연구책임자가(공동연구책임자 제외)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사전지원제외
<p>1. 기업의 부도</p> <p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3.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5.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,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,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p> <p>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 에는 'BBB+' , 'BBB' , 'BBB-' 를 모두 포함함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</p> </div> <p>※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,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(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)</p> <p>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p> <p>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</p>

사전지원제외

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할 수 있음[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,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]

※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,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(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)

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
-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
-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
-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
- 해외기관이 참여하지 않거나, 해외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

□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
-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,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,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(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)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협약서, 기술료 납부, 매출(미)발생 보고서, 정산금 또는 환수금(제재부가금)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
-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(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*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% 이내에서 산정 가능
-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(총괄주관연구개발

- 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를 모두 포함하되,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)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-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)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이어야 함.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 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
 -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 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
 -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
 -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(단,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)

4.4.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

-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·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
- ※ 정부에 의한 기 지원·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
 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의 “KETEP R&D 사업 → 과제찾기”
 - 타기관 공개자료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검색시스템 활용
- 제기기간 : 2026. 4. 22.(수) ~ 2026. 4. 29.(수)
- 제 기 처 : (06175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
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혁신추진단 국제협력실
- 제기방법 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
5. 평가절차 및 기준

5-1. 평가절차

□ 한-체코 국제공동연구

절차	일정	비고
사업공고 (기후에너지환경부)	'26.04.22	(한국) www.ketep.re.kr (체코) https://tacr.gov.cz/en/sigma-programme/
↓		
연구개발계획서 접수	'26.04.29 ~ '26.06.24	(접수처)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* 체코 측 접수처 및 마감기한은 체코 측 공고 참조
↓		
접수 서류 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	'26.7-10월	양국 공통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대상 양국 전문기관 평가 실시
↓		
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	'26.11월	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
↓		
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	'26.12월	지원대상과제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
↓		
신규과제 최종 확정	'26.12월	신규과제 확정 통보
↓		
협약체결 및 사업수행	'27.4월	양국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

□ 한-중국 국제공동연구

절차	일정	비고
사업공고 (기후에너지환경부)	'26.04.22	(한국) www.ketep.re.kr (중국) https://service.most.gov.cn/
↓		
연구개발계획서 접수	'26.04.29 ~ '26.06.22	(접수처)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* 중국 측 접수처 및 마감기한은 중국 측 공고 참조
↓		
접수 서류 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	'26.6-7월	양국 공통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대상 양국 전문기관 평가 실시
↓		
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	'26.7월	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
↓		
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	'26.7월	지원대상과제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
↓		
신규과제 최종 확정	'26.8월	신규과제 확정 통보
↓		
협약체결 및 사업수행	'26.8월	양국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

- 사전검토 :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검토
- 이의신청 :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

- 사업별 심의위원회 : 평가결과 조정·심의
- ※ 사업별심의를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
- ※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상기 일정은 양국의 평가 일정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-2. 평가기준

□ 평가항목(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)

지원분야	평가항목	세부 항목
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	시장성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화 계획 및 의지 ■ 시장 파급효과 ■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가능성 ■ 경제성(기술이전, 매출액 등) ■ 사전조사 및 현지 협력관계
	기술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의 경쟁력 ■ 개발목표 달성가능성
	연구수행 능력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구인력 및 연구 인프라 우수성 ■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
	국제협력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
	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(적정/부적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안전조치 이행현황 * 연구시설/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(연구시설 및 장비(시제품 포함)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*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

- 지원대상과제 :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“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”로 분류하며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“지원제외”로 분류함
- 평가점수(총점 평균)가 동일한 경우, 시장성(총점 평균), 기술성(총점 평균), 연구수행 능력(총점 평균)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
- 단, 평가점수(총점평균)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, 평가점수(총점평균)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

-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(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자 등)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3점)
 - *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(장), 공동연구개발기관(장),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
-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(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자 등)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3점)
 - *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: 수행포기된 과제의 귀책대상자(제재대상자)

**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(장), 공동연구개발기관(장),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

-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(3점)

*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

※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
※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,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

6. 근거법령 및 규정

□ 근거법령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,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

□ 관련규정

- 「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」, 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, 「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」, 「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, 「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」, 「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」, 「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 등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

7. 신청방법,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

□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

구분	내용		
신청방법	○ 계획서(필수서류)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* 오프라인(방문) 서류제출 불필요		
	구분	재무제표 외 제출서류(연구개발계획서 등)	재무제표
	온라인 제출처	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www.iris.go.kr)	원클릭서비스 (m.one-click.co.kr/#/ketep)
공고기간	○ (한-체코 국제공동연구) 2026. 4. 22.(수) ~ 6. 24.(수) 까지 ○ (한-중국 국제공동연구) 2026. 4. 22.(수) ~ 6. 22.(월) 까지 * 해외 기관은 공고기간이 상이함으로 상대국의 공고기간에 맞추어 접수 필수		
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	○ (한-체코 국제공동연구) 2026. 4. 29.(수) ~ 6. 24.(수) 18시까지 ○ (한-중국 국제공동연구) 2026. 4. 29.(수) ~ 6. 22.(월) 18시까지 * 접수마감시간 엄수 *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*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각 온라인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함		
	○ 양식교부 및 안내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 공지·공시(사업공고)		

□ 전산 등록처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www.iris.go.kr)

- ※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'접수전 필수 이행 사항'을 조치하여야 함(첨부 매뉴얼 참조)
- * 필수이행사항 :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,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
- ※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, **마감시간(18:00)이 지나면 접수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(입력·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)**
- ※ 회원가입,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~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
- ※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※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타 공고에 접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
□ 재무제표 제출처: 원클릭서비스(m.one-click.co.kr/#/ketep)

- ※ 원클릭서비스: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시스템
- ※ **IRIS 접수정보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제출하여야 함**(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 필요)
- ※ 원클릭서비스 최초 이용시 제출자 기본 정보 및 약관 동의 필요(홈텍스 등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)(첨부 매뉴얼 참조)

8. 문의처 등

□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 공지·공시(사업공고) 참조

-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: IRIS 고객센터 (☎1877-2041, 042-862-1500)
-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 제출 관련 문의 : NICE평가정보(주)(☎ 02-3771-1050)
- 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

구분	소속	담당자	연락처
한-체코	한국 (KETEP)	조인애 책임	02-3469-8433
	체코 (TACR)	Ms. Kateřina Feiglová, International Cooperation Coordinator	+420 771 238 762
한-중국	한국 (KETEP)	조인애 책임	02-3469-8433
	중국 (ISTCC)	중국과학기술부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	86-10-58881083

*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(고객만족 콜센터)

고객센터 서비스	연락처
에너지 R&D 전화상담 서비스	1899-0784

9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참고 붙임자료 안내

- 붙임1. 제출 서류 사항
- 붙임2.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 사항
- 붙임3. 기타 유의 사항
- 붙임4.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

붙임1 제출 서류 사항

번호	서류명	비고
1	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	▪ 전산파일 업로드(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)
2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(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)	▪ 전산파일 업로드(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) *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
3	연구개발계획서	▪ 전산파일 업로드(HWP)
4	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(국내기관용)	▪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▪ 모든 신청 기관(기업 포함) 제출 *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별 낱장 제출 가능
5	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	▪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(비영리는 면제)
6	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	▪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
7	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·과제정보 이용·제공 동의	▪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
8	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▪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
9	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협약서	▪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
10	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	▪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필요시 작성
11	수요기업 협약서	▪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
12	감점사항 확인서	▪ 전산파일 업로드(PDF로 스캔한 파일) * 해당시 작성(증빙서류와 함께 제출) *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
13	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(온라인 전용시스템(원클릭서비스) 으로 제출)	▪ 온라인 전용시스템(원클릭서비스)으로 제출 * 제출처: m.one-click.co.kr/#/ketep *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▪ 비영리와 상장사(거래소:코스닥) 미제출, 그 외 기업은 제출(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) *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*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*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(예,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, 2024년도, 2023년도, 2022년도 자료 제출) ▪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(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(회계사 직인 포함), 재무상태표(표준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(표준손익계산서)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)

* 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

** 연구개발과제참여자 :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

*** 해당시/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'해당없음' 표시 파일로 같음

붙임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 사항

□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

-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(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)는 인건비로 계상·집행 가능

□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

- 비영리기관 :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
- 대학 :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, 제17조 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, 겸임교원, 초빙교원 등,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 기관 인력(박사후 연구자 등)
- 외부 참여연구자 :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
- 영리기관(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)
 -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(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)
 -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 - 창업초기 중소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)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
 -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 소속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.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제4호에 따름
 -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(단,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,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)
 -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(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~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)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
 -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.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

□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

-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(단,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),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할 수 있음
 -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25년 10월 22일)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
 -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%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(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)

□ 외주 용역비 산정

-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·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,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. 이때, 3,00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
 - 외주 용역 수행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음. 다만,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

□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

-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

붙임3 기타 유의 사항

□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

-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국내신청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, 해외신청 기관은 각 담당 전문기관(체코기술청(TACR) 또는 중국과학기술부 국제협력센터 (ISTICC)에서 안내한 접수처에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를 동시 접수하여야 함(양국 모두 접수 필수)
- “기술료 비징수”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
- “기술료 비징수”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,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
- “기술료 비징수” 연구개발과제 외에는 “기술료 징수” 연구개발과제로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이 되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
- “안전관리형”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‘붙임4’의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
-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 제시된 “중간 마일스톤”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,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(대체지표 및 목표 등)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계획서에 타당성 제시
-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,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(연구비)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
-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,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
-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,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(총 연구개발비의 30%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,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%까지 계상 가능. 다만,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)
 - ※ 현물산정 :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% 이내 (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)
 - ※ 기술매매 :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, M&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
 - ※ 기술 라이선싱(전용/통상 실시 포함) :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선싱 비용 (계약금, 착수로,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)
 - ※ 현금계상 :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

-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“토론편가”를 적용할 수 있음(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)
-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
-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(시작품 포함)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- 진도점검 및 평가(단계·최종·특별)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

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(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)의 귀속

-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3조 및 제35조의2를 따름
-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유·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 - 단,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·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

-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. 이때,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
-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
 - 다만,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
-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참조

□ 보안등급 분류

-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-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

-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-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「대외무역법」 제29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. 단,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·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

□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

-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이어야 함(학생 연구자는 제외)

□ 안전관리 비용 확보

-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연구시설, 장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또는 컨설팅, 안전관련 소모품 구매 등의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, 관련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음

붙임4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

□ ‘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’ 정의

- 연구실,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

□ ‘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’ 대상 여부

- 공고문 연구개발과제목록, 기술개요서 참조

□ ‘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’ 주요 유의사항

- ‘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’ 및 ‘산업안전보건법’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·제출해야하며,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함
-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·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
-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(연 1회 원칙)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,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(직접비 중 연구활동비)에서 지원 가능
- ‘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’중 위험물질 취급 유무는 기술개요서 참조
- 진도점검 및 단계·최종·특별평가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,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
-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총 연구개발기간 중 시설 및 장비(시작품 포함)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(시작품 포함)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,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(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)하여 보고해야 함